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동이사 공개모집 공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화,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해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노동이사를 모집 공고 합니다.

1. 임명예정 직위

- 노동이사 : 1명

2. 주요 직무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이사회 개최 시)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선임직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6)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1년단위 연임가능) * 근로계약 해지시 이사의 임기도 자동 종료

4. 자격요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퇴직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결격사유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우리원 정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관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한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우리원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 결격사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피선거권) ① 노동이사후보

는 진흥원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퇴직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후보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관」 제7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4. 2급 및 2급 상당 이상의 고위 직급자 또는 인사, 노무, 감사 부서의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5.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5. 보 수 : 연봉 없음 (다만, 이사회 참석수당 실비지급)

6. 서류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6. 8. 18.(화) ~ 9. 2.(수) 18:00까지
- 서류교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클린아이 잡플러스 (<https://job.cleaneye.go.kr/>)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bipa.kr>) 및 그룹웨어 게시판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recruit@bipa.kr)
 -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노동이사_지원자 성명”, ex) 노동이사_홍길동
- 접 수 처 : 소통경영단 인재경영팀 노동이사 담당자 (전화 : 051-749-9327)

7. 제출서류

연 번	제출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노동조합 대표자 추천서(자유양식) or 후보자 추천서(추천인 13명 이상 서명)
3	직무수행계획서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결격사유해당유무확인서

8. 전형방법 : 종합평가

- 투표결과(대표성 확보차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인 선정

9. 투표 방법 및 일시

- 투표일시 : 2026. 9월 중 (후보자 등록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투표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직접·무기명·비밀투표)

10. 임 명 : 이사장이 임명함.

2026년 8월 18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서식 1호]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동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진 3×4cm
성 명	김○○(金○○)		
주 소	부산시 ○○로 ○○아파트 101-908		
생년월일	1970 년 1 월 1 일(만49세)	사원번호	200000000
소속부서		직 급	0급
근무이력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2005. 2. 1. ~ 2008. 4. 30.	○○부서 선임	
	2008. 5. 1. ~ 2011. 4. 30.	○○부서 과장	
위와 같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동이사후보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입후보자 : ○ ○ ○ (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2호]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동이사후보 선거
후 보 자 추 천 서

☐ 노동이사후보 : 소속 ○○부서 성명 ○ ○ ○

상기인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동이사후보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소속부서	사원번호	성 명	서 명
1	○○부서	200000000	홍길동	홍길동
2	○○부서	200000000	○○○	○○○
3	○○부서	200000000	○○○	○○○
4	○○부서	200000000	○○○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3호]

노동이사 후보 직무수행계획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

.....

2026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전형방법 내 평가항목 내용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투표결과 제외)
- 현재까지 관련 기관 등에서 달성한 업적 등 직무수행 능력은 구체적으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여 작성
- 글씨크기 휴먼명조 13, 줄간격 160%, 용지의 상하좌우 여백은 각각 18,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으로 작성
- 글씨 크기 : 휴먼명조 13, 줄 간격 160, 용지의 상하좌우 여백은 각 각 18, 머리말·꼬리말은 각 각 15로 작성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서식 4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재단법인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원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 · 이용)	▪ 직원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수집 · 이용)	▪ 개인식별정보 -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 개인식별정보 외에 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 학력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3자 제공)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경찰관서, 등록기준지 소재 구청장, 읍면동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3자 제공)	▪ 임원채용 관련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임면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서류 보유기간(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직원 채용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채용심사과정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신원조회 불가로 채용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서식 5호]

결격사유 해당유무 확인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유무 (자필표기)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